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가합55977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4. 11. 5.

판결 선고2014. 11.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013,188원 및 그 중 182,964,427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259,712,679원에 대하여는 2014. 6. 17.부터 각 2014. 10.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논산시 D 전 2,202m²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4. 3.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3. 14. 접수 제78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구상금 청구

-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2010. 9. 8. 대출은행 국민은행,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1. 9. 7.(2014. 9. 5.로 연장됨)로 된, 2011. 4. 29. 대출은행 우리은행,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2. 4. 27.(2014. 4. 25.로 연장됨)로 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피고 A는 2014. 3. 12.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13. 우리은행에게 182,964,427원을, 2014. 6. 17. 국민은행에게 259,712,67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2014. 4. 26.부터 2014. 6. 12.까지 위약금 449,750원이 발생하였으며, 채권보전비용으로 1,574,164원을 지출하였다가 687,832원을 회수하여 886,332원이 남게 되었다.
-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구상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2014. 6. 13.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 4)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444,013,188원(= 2014. 6. 13.자 대위변제금 182,964,427원 + 2014. 6. 17.자 대위변제금 259,712,679원 + 위약금 449,750원 + 채권보전비용 잔액 886,332원)과 그 중 2014. 6. 13.자 대위변제금 182,964,427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6. 13.부터, 2014. 6. 17.자 대위변제금 259,712,679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6.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4. 10. 28.까지는 약정이율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청구

1) 피고 A는 2014. 3. 12. 이자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2) 피고 B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4. 3. 12. 피고 A의 주주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논산시 D 전 2,202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4.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고, 피고 C도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3)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재판장판사배호근

판사이승훈

판사이유빈